

G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2. 15. / (총 14매)				
총괄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팀	팀 장 담 당 자	손 영 래 김 민 주	전 화	044-202-3803 044-202-3808	
우한귀국	중앙사고수습본부	담 당 자	유 보 영	전 화	044-202-3711	
국민지원	교민지원TF	담 당 자	박 지 혜		044-202-3715	
생활지원비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임 호 근	전 화	044-202-3020	
유급휴가비	대국민지원 1팀	담 당 자	정 순 길		044-202-3277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과 장	하 태 길	전 화	044-202-2940	
혈액수급	생명윤리정책과	담 당 자	김 현 아		044-202-2944	
확진·격리자	보건복지부	과 장	흥 정 익	전 화	044-202-2860	
상담지원	정신건강정책과	담 당 자	김 욱		044-202-286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신청안내, 의료기관 내 혈액수급 대책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노홍인 총괄책임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각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3차 우한 국민 등 임시생활시설 입소상황 ▲1·2차 우한 국민 퇴소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안내 ▲의료기관 내 혈액수급 위기대응 체계 마련 ▲격리해제자·퇴원환자 등 상담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1 3차 우한 귀국 국민 등 입소 상황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차 우한 국민 등의 임시생활시설 입소 상황 및 1·2차 우한 국민의 퇴소계획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현재 국방어학원에 입소한 우한 국민 등 148명은 대부분 특이사항 없이 입소생활을 지내고 있다.











평생친구

○ 다만, 어제 발열증세로 인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8개월 영아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병원에 더 머무르기로 하였고 정부합동지원단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으로 이유식과 기저귀 등을 지원하였다.

2 1·2차 우한 귀국 국민의 퇴소계획

- □ 아울러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한 1·2차 우한 국민 등 702명(자진입소자 포함) 가운데 입소 중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을 제외한 700명은 2월 15일과 16일에 걸쳐 퇴소할 계획이다.
- **1차**로 1월 31일에 입국한 우한 국민 등 366명(아산193명, 진천173명) 은 2월 15일에 퇴소하고, **2차로** 2월 1일에 입국하여 아산에서 생활하고 있는 334명(자진입소자 1명 포함)은 2월 16일에 퇴소한다.
- 퇴소하는 국민들(700명)은 퇴소 전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전원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퇴소 전에 중상 발생 시 대처요령 및 건강관리 등에 관한 보건교육과 단기숙소 및 일자리 등 관련 생활정보를 제공받는다.
- 오늘 퇴소하는 우한 국민들은 간단한 격려의 퇴소행사 이후 **희망** 지역에 따라 5개 권역별로 분산하여 이동할 예정이다.
- 각 시설은 우한 국민 퇴소 후 철저히 소독하고, 시설 내의 모든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써 소각 처리할 예정이다.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부터 **퇴소하는 우한 국민과 그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안내

- □ 정부는 2월 17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워 신청을 접수한다.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이 치료와 격리에 적극적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70조의4
- 생활지워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에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워된다.
 - 지워금액은 과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며,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으로 123만원이 지급되고,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F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
-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다.
 -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 한편,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워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2월 17일부터 신청을 접수하되 예비비 등 관련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평생친구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지난 2월 14일에 시·도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각 시·도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였다.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나 입원 격리를 받게 되는 분들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격리기간 동안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책임감 있게 자가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료기관 내 혈액수급 위기대응 체계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0여 개 주요 혈액사용 의료기관에 대해 「민·관 합동 혈액 수급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이하 '위기대용 매뉴얼')의 혈액 수급 위기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 이는 최근 코로나19 국내 유입으로 인해 혈액수급이 악화되면서 혈액 보유량이 위기대응 매뉴얼의 '주의단계' 기준인 3.0일분 수준까지 낮아질 우려에 따른 조치이다.

날짜	23(월)	24(호)	25(分	26(목)	27(금)	28(島	29(일)	210월	211(호)	212 (^)	213(写
혈액보유량	3.3	3.0	2.9	<u>3.0</u>	<u>3.1</u>	3.6	3.7	3.6	3.5	3.5	3.7
'19년 대비 감소량	▲2.2	^ 2	▲ 1.7	▲1.6	▲ 1.7	▲1.4	▲ 1.8	▲2.2	^ 2	▲1.7	▲1.2

○ 이에 따라 주요 혈액사용 의료기관은 "민관합동 혈액수급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혈액수급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의료 기관 내 혈액보유량을 점검(모니터링)하는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위기단계별 적정 혈액재고량 및 사용량, 위급도에 따른 수혈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혈액보유량 위기단계에 따른 대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이에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 기관의 혈액사용량 관련 역할은 2018년에서야 위기대응 매뉴얼에 규정되어 의료기관들의 인식도가 낮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 "이번 조치에는 예시안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체계 마련을 지원하였으며, 금번 조치가 향후 도래할 혈액수급 위기에 대처할 혈액사용 관리방안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적정한수혈관리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할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말했다.

5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심리지원

- □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지난 1월 29일부터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국가트리우마센터가 총괄하여 국립정신의료기관, 전국의 광역·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구성. 체계적으로 심리 상담 및 대상자 관리 등 운영
- 입원 치료 및 격리 과정 등에서 감염병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감염병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일반 국민들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 확진자와 그 가족, 격리 경험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생활 복귀를 도모하고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심리지원*과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 * 심리상담(2.14 기준, 누적건수) : 임시생활시설 318건, 확진자·격리자 279건, 일반인 2,997건











평생친구

- □ 감염 확진자 및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영남권 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권역별로 유선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하고, 정신건강 평가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치료를 연계할 계획이다.
- 또한 **국가트라우마센터 핫라인(02-2204-0001)**을 통해 **24시간 응급** 심리 상담도 지원한다.
 - * (수도권)국가트라우마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영남권)영남권트라우마센터(국립부곡병원), (전라권, 제주)국립나주병원, (강원)국립춘천병원, (충청,대전,세종)국립공주병원
-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격리자 및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핫라인 (1577-0199)을 이용하면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 붙임 > 1.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사업 개요
 - 2. 우한 국민 관련 보도 협조 요청
 -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 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 5. 감염병 예방수칙
 - 6.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붙임1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사업 개요

① 생활지원비

-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 단,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
-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 외국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로 산정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② 유급휴가비

-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평생친구

붙임2

우한 국민 관련 보도 협조 요청

우한 국민과 관련하여,

개개인에 대한 보도는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한 국민, 가족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개인에 대한 사진, 영상 촬영 및 개별 접촉을 통한 보도 등은 최대한 신중하게 해주시길 가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 5월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함께 만든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감염병 보도의 정확성

- 현 시점까지 사실로 밝혀진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할 근거 필요
-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전달하지 않고 과도한 보도 경쟁 자제

2. 감염병 보도의 일반 사항

- 해당 병 취약집단을 명확히 알리고, 과학적 입증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반복적 제공
-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과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 전문·의학용어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혼돈 완화

3.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 관련 보도

- 발생원인: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경우는 의학적 규명사실을 명확히 구분해 보도
- 다양한 전문가 의견 제시하되 정확한 조사결과 전까지 추측과장 보도 자제

4. 감염병 연구 결과의 보도

- 새로운 연구결과가 특정 제약사 이익이나 정부 입장을 일방적 지지하는지 확인
- 연구결과가 중간결과인지 최종결과인지 확인하여 보도

5.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감염 가능성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보도하고, 혼란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
- 감염 가능성, 증가율, 사망예상자 비율을 제시할 경우, 실제 수치도 함께 전달
- 감염 규모 숫자 전달 시, 단위가 사건인지, 사례인지, 감염자 수인지 명확히 전달

6. 감염자에 대한 보도

- 신상에 대한 보도는 차별.낙인 발생 가능성 있으므로 신중
- 환자·가족 인권과 사생활 침해하지 않도록 사진·영상·개인정보 등 보도 주의

7. 감염병 보도에서 주의 필요 표현

- 규모, 증상, 결과에 대한 과장된, 자극적인 표현 자제









보다나은 정부

붙임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0 0

감염병 예방 수칙



손바닥, 손톱 밑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



감염병이 의심될 땐 관합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발열, 호흡기증상자(기침, 인후통등) 접촉 금지





· 중국 여행 후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귀국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 :

해외감염병 NOW Q 에서!

발행일: 2020.2.12.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PEN



동물 발열, 호흡기증상자와의 접촉 금지 기침, 인호통 등 접촉 금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고,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하기





게시일: 2020.2.12.







붙임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평생친구

붙임5

감염병 예방수칙







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치학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붙임6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2020.2.12.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강영 전파 방지를 위해 격긴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❷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❷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질병관리본부

KCDC



평 생 친 구

2020.2.12.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